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1. 9 선고 2021가단339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2.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2. 24. 접수 제106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6. 14. C와 사이에, C이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C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 체결일 : 1996. 6. 14.
- 증권번호 : E
- 보험가입금액 : 14,590,000원
- 보험가입기간 : 1996. 5. 4.부터 1999. 5. 3.까지
- 보증내용 : 자동차 할부금 지급보증

나. 그 후 C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D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7. 2. 25.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10,286,297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C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중 미변제 잔액 및 미지급 이자 등 합계 21,115,513원 및 그 중 위 미변제 잔액인 1,509,159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위 법원 2018차전1360174호)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8. 12. 5. 원고의 위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1.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9. 8. 30. 사망한 C의 부친인 망 F의 소유였고, 망 F의 공동상속인들로는 망 F의 배우자이자 C의 모친인 피고 및 망 F의 자녀들인

G, H, I, J, C, K이 있었다.

마. 피고 및 G, H, I, J, C, K은 2020. 2.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2. 24.자 접수 제1062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C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금채무 외에도 IBK기업은행에 대한 2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가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5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시가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전체 가액(원)	2/15 지분의 가액(원)
구미시 L 대지 97㎡	102,820,000	13,709,333
위 지상 1층, 2층 건물	40,368,240	5,382,432
구미시 M 도로 9㎡	5,490,000	732,000
합계	148,678,240	19,823,76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O에 대한 시가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이미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보다 소극재산의 가액이 큰 채무초과 상태였는바, C이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은 오랫동안 피고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의 연락이나 왕래가 없어 피고는 C의 재산상황이나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남편인 망 F과 함께 거주해 온 주택과 그 부지(별지 목록 중 제1항 및 제2항)뿐만 아니라 망 F이 소유하였던 상속재산을 모두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점, 피고와 C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구미시
대 97㎡
2. 경상북도 구미시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층 소매점 52.14㎡
2층 주택 49.8㎡
3. 경상북도 구미시
도로 9㎡

- 이 상 -

